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40호 2023. 6. 22.(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46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1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132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시행계획 변경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023-133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등 고시 ----- 4
- 사천시 고시 제2023-134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등 고시 ----- 28
- 사천시 고시 제2023-1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30
- 사천시 고시 제2023-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 3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89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2
- 사천시 공고 제2023-899호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공모전 수상작 발표 공고 - 56
- 사천시 공고 제2023-917호 『청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60
- 사천시 공고 제2023-92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국유재산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철거) 공시송달 공고 ----- 65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훈령 제446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6월 22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건축과 건축복합민원팀의 분장사무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허가취소,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별표 2의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의 분장사무란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고시 제2023-132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176(2022.08.25.)호로 시행계획수립 고시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사업계획(시행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 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14,967백만원(국비 10,477, 도비1,347, 시비 3,143)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의 내용

- 공통사업

·영북항: 방파제 설치, 주차장 설치, 안전휀스 설치

·광포항: 부잔교 확충

·산분령항: 물양장 설치

·실안항: 방파제 확충, 계류장 설치, 물양장 설치, 어구보관창고 설치

- 특화사업

·산분령항: 다목적회관

- S/W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마을 브랜드 개발 등

○ 사업의 구역: 사천시 실안동 산4-1번지 영북항외 3개항(광포항, 산분령항, 실안항)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5. 사업예정기간(변경)

- 당 초: 2019년 1월 1일 ~ 2023년 06월 30일
- 변 경: 2019년 1월 1일 ~ 2023년 09월 30일

6. 사업의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
-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7. 사업시행자: 사천시청(해양수산과)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붙임조서 참조”

9. 기 타

시행계획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6)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실안동	1187-3	잡	1,694	800	사천시					
실안동	875-21	잡	1,579	400	해양수산부					
실안동	1187-2	도	1,642	45	국토교통부					
실안동	1096-41	잡	200	200	사천시					
실안동	1096-51	잡	550	55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고시 제2023-133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등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및 구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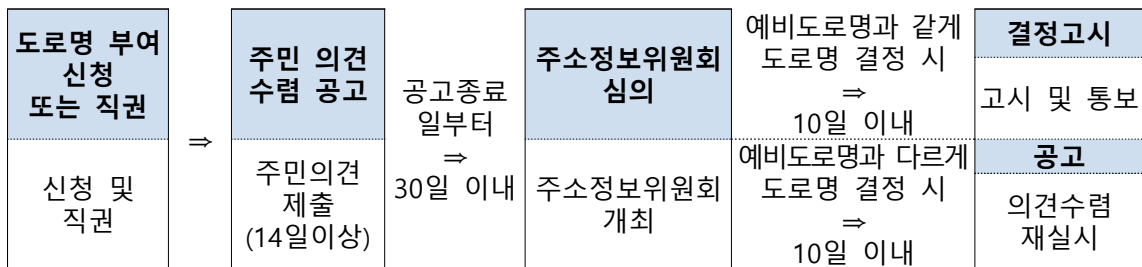
2023. 6. 22.

사 천 시 장

1. 고시일: 2023. 6. 22.(목)
2. 고시방법: 관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40건(신규 31, 구간연장 9)

※ 붙임 참고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용당이주단지길	정의리11-1	구암리 1401-3	도면 참조	317	9.18	길	10	1/34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2023.1.31.	사천읍
2	용당이주단지길 (종속)	정의리1-7	정의리1-15	도면 참조	80	10	길	10	A-1/A-16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2023.1.31.	사천읍
3	용당이주단지길 (종속)	정의리 437-11	정의리1-8	도면 참조	58	10	길	10	A-1/A-12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	2023.1.31.	사천읍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4	사주4길	사주리 7-2	수석리 304-63	도면 참조	210	7.8	길	10	1/42	도로명 미부여 도로	2022.11.28.	사천읍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5	종포해안길	신촌리417-1	신촌리 558-7	도면 참조	971.5	7	길	20	1/98	도로명 미부여 도로	2020.2.6.	용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6	화곡1길	신촌리 435-2	신촌리 481-2	도면 참조	162	5	길	10	1/34	도로명 미부여 도로	용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7	선진항길	선진리 982-2	선진리 1001-15	도면 참조	185	6.77	길	20	1/20	항·포구 도로명 부여	2021.2.1.	용현면
8	선진항길(중속)	선진리 984-6	항구 끝	도면 참조	117	4.4	길	20	A-1/A-12	항·포구 도로명 부여	-	용현면
9	선진항길(중속)	선진리 984-6	항구 끝	도면 참조	166	7	길	20	A-1/A-18	항·포구 도로명 부여	-	용현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예정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0	대동산단로	사다리 217-1	사다리 1040	도면 참조	844	18.3	로	20	1/86	대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2024.6.30.	축동면
11	대동산단1길	사다리 산 27-1	사다리 산 26-1	도면 참조	1044	20	길	20	1/106	대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2024.6.30.	축동면
12	대동산단1길(중속)	사다리 193	사다리 1049-1	도면 참조	133	7.5	길	20	A-1/A-14	대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2024.6.30.	축동면
13	대동산단2길	사다리 121-1	사다리 135-2	도면 참조	120	8	길	20	1/12	대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2024.6.30.	축동면
14	대동산단3길	사다리 133-11	사다리 산 43-3	도면 참조	247	10	길	20	1/26	대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2024.6.30.	축동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5	아방길(연장)	아방길120	항구 끝	도면 참조	170	5	길	20	120-1/120-18	항·포구 도로명 부여	곤양면
16	아방길(중속)	중항리 1105-1	중항리 3	도면 참조	75	6	길	20	A-1/A-8	항·포구 도로명 부여	곤양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7	구포3길(연장)	구포3길 270	항구 끝	도면 참조	293	4	길	10	271/334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8	별학길	거북길468-10	비토리 산47-8	도면 참조	756	4	길	20	1/76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19	별학길(종속)	비토리 14-9	항구 끝	도면 참조	112	5	길	20	A-1/A-12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0	선창제방길	서포로101-45	다평리1449-5	도면 참조	660	3.8	길	20	1/66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1	아랫몰길(연장)	아랫몰길214	조도리383-1	도면 참조	96	3.7	길	10	215/234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2	용궁항길	용궁로22-44	비토리 5-181	도면 참조	236	6	길	20	1/24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3	월등도길(연장)	월등도길134	항구 끝	도면 참조	93	5	길	10	135/154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24	월등도길(종속)	비토리 3-10	비토리 산4-3	도면 참조	30	8.4	길	20	A-1/A-4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5	한개길(연장)	한개길338	조도리30-3	도면 참조	75	4	길	10	339/354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26	질구지길(연장)	질구지길234	구랑리1-24	도면 참조	253	3.	길	10	235/286	항·포구 도로명 부여	서포면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7	산분령항길	노을길237	실안동1096-38	도면 참조	185	3.5	길	20	1/20	항·포구 도로명 부여	동서동
28	산분령항길(중속)	노을길233	항구 끝	도면 참조	28	3.8	길	20	A-1/A-4	항·포구 도로명 부여	동서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9	저도길(연장)	저도길74	항구 끝	도면 참조	132	5.5	길	10	75/102	항·포구 도로명 부여	동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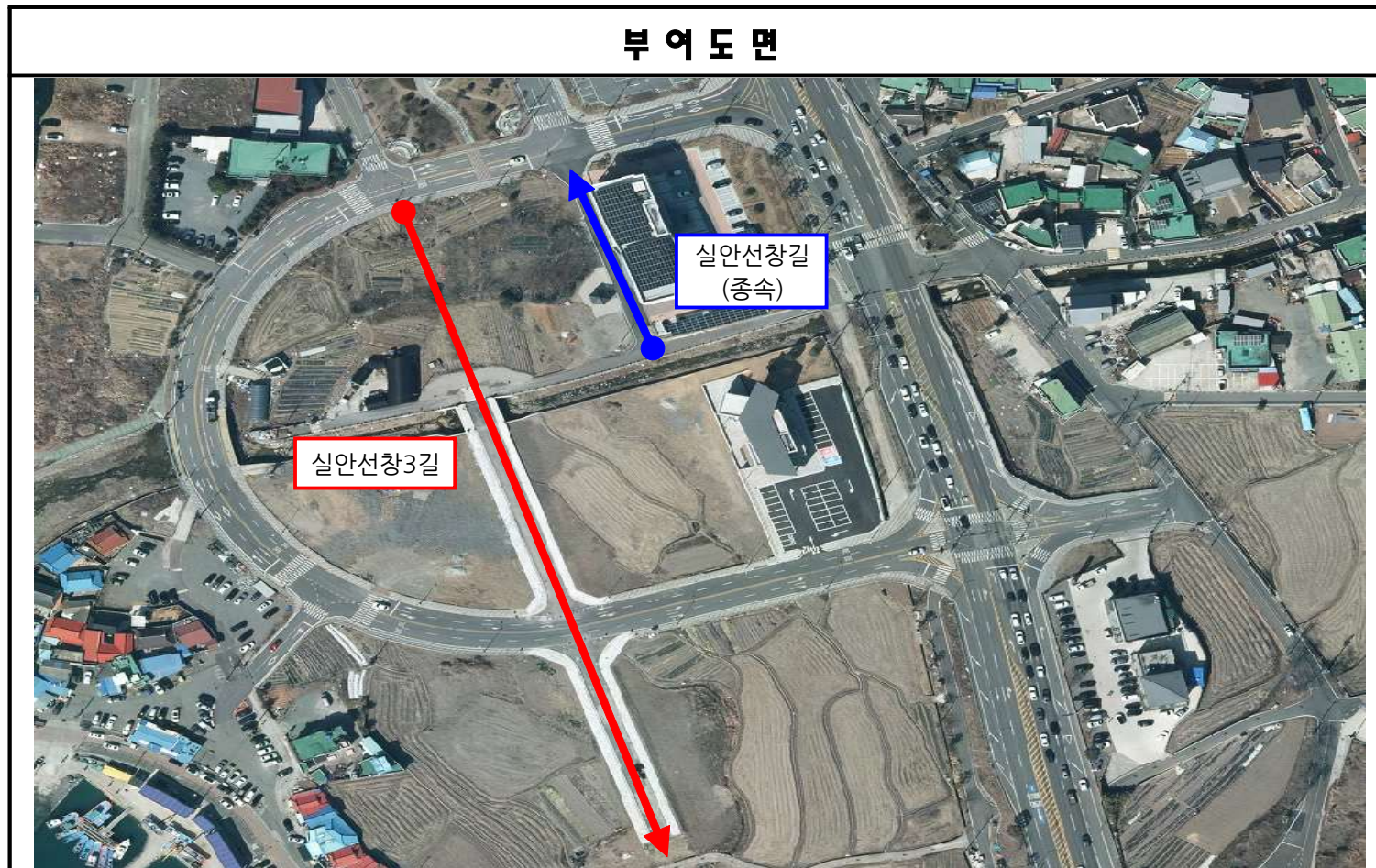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0	초양길(연장)	초양길65	늑도동502-13	도면 참조	60	3.5	길	10	67/78	항·포구 도로명 부여	동서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예정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1	실안선창3길	실안동 903	실안동 847-5	도면 참조	268	11.5	길	20	1/28	도로명 미부여 도로	2023.6.23.	동서동
32	실안선창길(중속)	실안동 1251	실안동 887-10	도면 참조	76	8.2	길	20	A-1/A-8	도로명 미부여 도로	2023.6.23.	동서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예정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3	실안3길	실안동 670-2	실안동302-3	도면 참조	512	6.5	길	20	1/52	도로명 미부여 도로	2023.12.31.	동서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4	팔포제방길	팔포3길56-16	동금동579-6	도면 참조	305	6.3	길	20	1/32	항·포구 도로명 부여	동서금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5	신항만1길(연장)	신항만1길92	향촌동1292	도면 참조	1065	7	길	10	93/306	항·포구 도로명 부여	향촌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준공일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36	대포항1길	석양길250	항구 끝	도면 참조	478	5	길	20	1/50	항·포구 도로명 부여	2022.8.25.	남양동
37	대포항1길(중속)	대포동438-7	대포동438-7	도면 참조	80	6.6	길	20	1/8	항·포구 도로명 부여	-	남양동
38	대포항2길	석양길238	대포동457-12	도면 참조	300	5.6	길	20	1/30	항·포구 도로명 부여	-	남양동
39	대포항2길(중속)	대포동457-3	대포동457-13	도면 참조	64	5	길	20	1/8	항·포구 도로명 부여	-	남양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40	광포항길	해안관광로331-14	송포동1526-15	도면 참조	168	6.5	길	20	1/18	항·포구 도로명 부여	남양동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고시 제2023-134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등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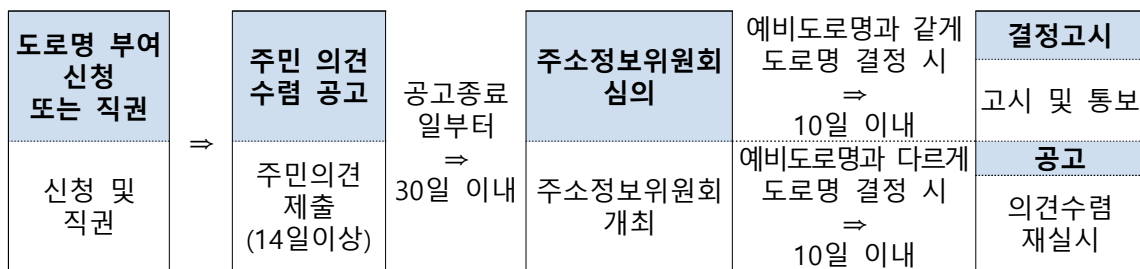
2023. 6. 22.

사 천 시 장

1. 고시일: 2023. 6. 22.(목)
2. 고시방법: 관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명예도로명 부여 1건(박서진길)

※ 붙임 참고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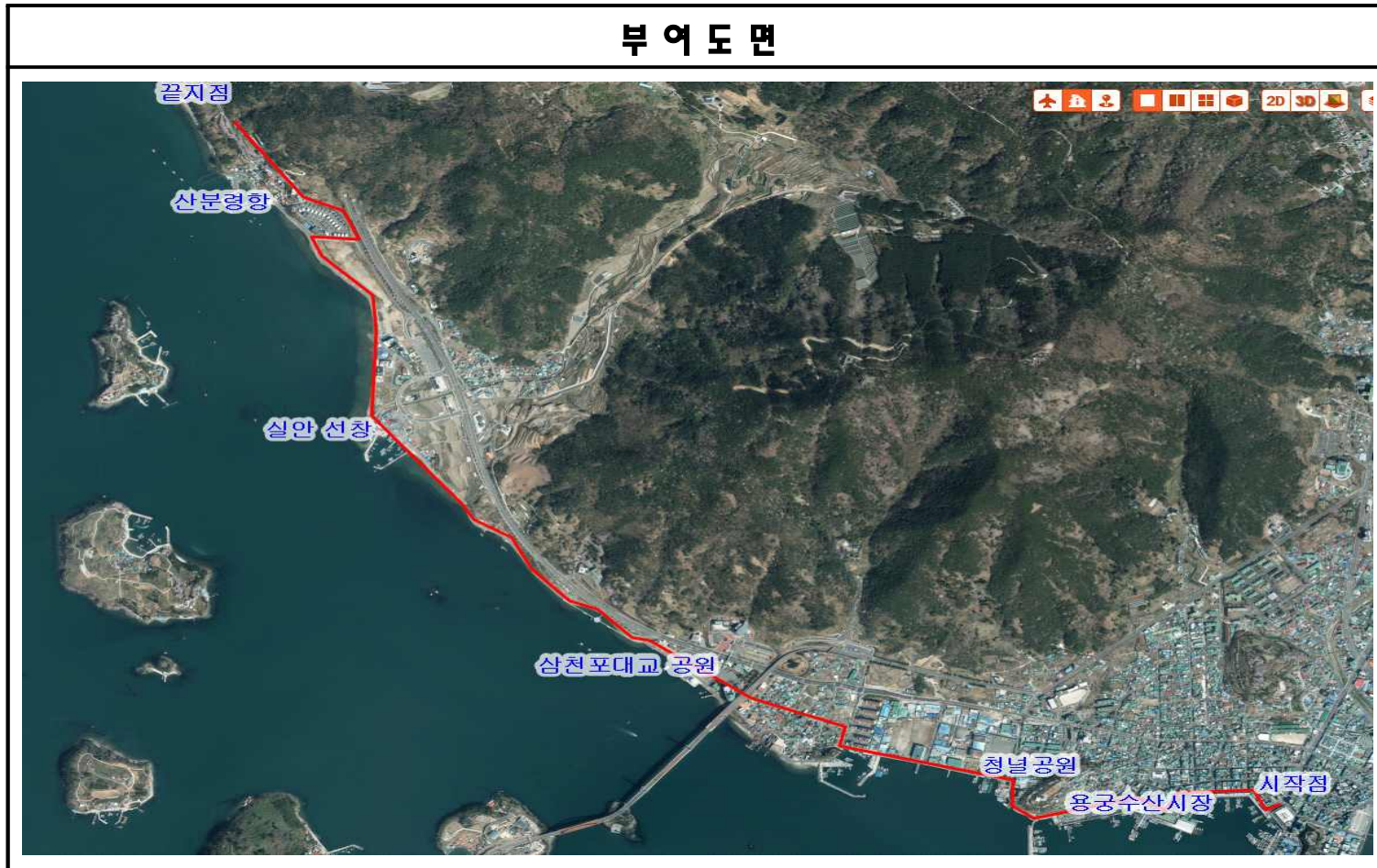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22)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 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km)	위계	명예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박서진길	노산공원길16	해안관광로177	도면 참조	5.8	길	사천홍보 및 관광활성화	동서동 선구동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고시 제 2023-1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6. 22.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16 (2023.6.15.)	신소항 부잔교 설치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49-5번지선	56 (직접)	2023.06.15.~ 2038.06.14.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고시 제 2023-13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6. 22.

사 천 시 장

신 고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수리일자)	공 사 내 역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13 (2023.5.18.)	2023.05.18.~ 2053.05.17.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206-23번지선	707 (직접)	2023-13 (2023.6.14.)	상촌항 물양장 확장 (B=10.0m, L=46m)
		2023-14 (2023.5.25.)	2023.05.25.~ 2038.05.24.	사천시 대포동 438-6번지선	826.5 - 직접 102.5 - 간접 724	2023-14 (2023.6.14.)	대포항 부잔교 설치 (B=4.0, L=25m)
		2023-15 (2023.5.25.)	2023.05.25.~ 2038.05.24.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105-5번지선	925.7 - 직접 86.7 - 간접 839	2023-15 (2023.6.14.)	중항항 부잔교 (B=3.6, L=20m) 및 도교 설치 (B=1.2m, L=15m)
		2023-12 (2023.5.18.)	2023.05.18.~ 2053.05.17.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20-11번지선	1,808 (직접)	2023-16 (2023.6.20.)	구우진항 방파제 연장 (B=7.0m, L=70m) 경관구조물 등 설치
		2023-16 (2023.6.15.)	2023.06.15.~ 2038.06.14.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49-5번지선	56 (직접)	2023-17 (2023.6.20.)	신소항 부잔교 설치 (B=3.7, L=15m)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공고 제2023-896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사 천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 정비(안 제12조)

나.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 변경(안 제13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10조, 제18조의2, 제45조 ~ 제47조, 제52조의2)

라.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부칙 개정(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Tel: 055-831-3166, FAX: 831-6033)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도시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해 조례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 정비(안 제12조)

나.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 변경(안 제13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등(안 제10조, 제18조의2, 제45조 ~ 제47조, 제52조의2)

라. 사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부칙 개정(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6. 22. ~ 2023. 7. 1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다목 중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1의2. 독립된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나.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제13조제1호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4호 중 “거목·더목”을 “거목, 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건축물로 한정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를 “경우로서 660제곱미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6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10호”로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45조제16호가목 중 “영 제84조제5항”을 “영 제8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나목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과 제5항”을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조례 제967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봉계지구, 정곡지구”를 “봉계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공작물의 설치</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p>	<p>제1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다. -----</p> <p style="padding-left: 20px;">-----</p> <p style="padding-left: 20px;">-----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A writing template consisting of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on the left and a vertical column of 20 dashed lines on the right, intended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dashed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from top to bottom.

3. ~ 6. (생략)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
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
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
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
다.) 다만, 독립된 산지로서 개발
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
는 경우와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평균경사도
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
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1. 평균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미만(평균경사도의 산정방법과
구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
한다.)

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2. 삭 제

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다음

1의2. 독립된 산지로서 평균경사도가 18도 이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공장은 15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를 하고 남은 일단의 면적이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나. 절개사면이 발생되나 토목기술자의 기술자문을 받아 보강이 가능할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 4. (생략)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은 해당

-----.

-----.

1. -----

----- 「하수도
법」 -----

-----.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 거목, 더목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

-----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

-----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중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12.31.>

<신 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9. -----

-----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 제10호-----

제4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5. (생략)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는 30퍼센트 이하)

가.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나.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생략)

17. ~ 21. (생략)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

1. ~ 15. (현행과 같음)

16. -----

가. 영 제84조제6항-----

나. 영 제84조제9항-----

-----.

다. (현행과 같음)

17. ~ 21. (현행과 같음)

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략)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제52조의2(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생략)

② (생략)

-----.

1. ~ 10. (현행과 같음)

제4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

제52조의2(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한 용적률 완화) ① -----

-----.

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부칙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45조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u>분계지구, 정곡지구, 배춘지구, 신복지구, 정곡2지구</u>)에 대하여는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로 적용한다.</p>	<p>②----- ----- -----<u>분</u> <u>계지구</u>----- ----- ----- -----.</p>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 9. 8., 2006. 8. 17., 2008. 9. 25., 2009. 7. 7., 2009. 7. 27., 2010. 4. 29.,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23. 3. 21.>

1. 생략
2. 공작물의 설치
 - 가. 생략
 - 나. 생략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 6. 생략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2023. 3. 21.>

1. 생략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 나 생략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마. 생략

② ~ ⑦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② 생략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2. 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10. 1., 2011. 3. 9., 2011. 11.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25., 2009. 7. 7., 2011. 7. 1., 2012. 4. 10., 2014. 1. 14., 2014. 10. 15., 2015. 7. 6., 2016. 2. 11., 2016. 5. 17., 2019. 8. 6., 2019. 12. 31., 2020. 5. 26., 2021. 7. 6.>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 1. 14.>

나. 삭제 <2014. 1. 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

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9. 8.,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2023. 3. 2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 9. 16., 2012. 4. 10., 2015. 12. 15., 2016. 2. 11., 2019. 12. 3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7. 7., 2011. 9. 16., 2012. 4. 10., 2016. 2. 11., 2019. 12. 31.>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공고 제2023-899호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공모전 수상작 발표 공고

사천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우주항공도시 사천, 건물번호판에 아름다움을 더했어요」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22.

사 천 시 장

1. 공 모 명 : 우주항공도시 사천, 건물번호판에 아름다움을 더했어요
2. 접수기간 : 2023. 4. 19. ~ 5. 19.
3. 참가대상 : 도로명주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
4. 주 제 : 우리 시(서포면 비토리) 소재 별주부전의 전설이 서려있는 토끼와 거북이를 상징하는 창의적인 건물번호판 디자인(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5. 심사기준 : 디자인, 판독성, 활용성 등 종합 판단
6. 시 상 : 총 5명, 6,000,000원(육백만원)

계	대 상	입 상	비 고
5명	1명 (300만원)	4명 (300만원)	- 중복입상: 대상, 입상 각1명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 대상 : 100만원, 입상 : 50만원

7. 수상작품 : 첨부 참고
 -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고, 우리 시는 시상금 지급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바 공모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응모 접수 시 이를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작품은 미발표된 창작물로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모방 작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 작품이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타인의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포 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응모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수상이 취소됩니다.
- ❖ 문의처: 사천시 토지관리과 (055-831-2820, FAX: 055-831-6929)

자율형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 당선작

□ 당선작(9편)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목 : 토끼와 네잎클로버, 토끼야 어디있니?, 토끼 용궁 가다 (한O영작) ■ 작품내용 : 별주부전 이야기 내용을 토대로 토끼로, 거북길, 용궁로 시리즈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재미나게 구성해보았습니다. 건물번호판에 별주부전 이야기를 담다보니 복잡한 요소가 많아져서, 최대한 단순하게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컬러를 하나로 통일하여 시인성과 판독성을 높였습니다.
-----	--



입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목 : 별주부전의 전설 사천의 전설 (김O희작) ■ 작품내용 : 사천의 상징마크를 배경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별주부전 전설에서 토끼가 거북이를 타고 용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	--




입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목 : 토선생 못봤소? (황○길작) ■ 작품내용 : 비토섬이 갖는 지역적 특성이 건축물에서도 느껴질 수 있도록 별주부전의 이야기가 담긴 건물번호판을 구상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소설인 별주부전의 스토리를 담고자 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선시대 병풍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일러스트와 시인성 높은 단색 컬러를 활용하여 심미성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건물번호판입니다.
-----	---



입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목 : 건물번호판을 삼킨 거북이 (정○희작) ■ 작품내용 : 별주부전의 고향 사천시 비토섬을 상징하는 토끼와 거북이를 대상으로 비토섬만의 특색을 건물번호판에 녹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
-----	---



<p>입 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제목 : 사천, 건물번호판 (정O준作) ■ 작품내용 : 도로명주소에 남녀노소가 좋아할만한 캐릭터 개념을 적용, 스토리텔링을 통해 사천을 방문하는, 사천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 유래와 전설 및 사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공고 제2023-917호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사천시 대방동 일원에 추진 중인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6. 22.

사 천 시 장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가. 종 류: 재해예방사업(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 나. 명 칭: 청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 나.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사업예정지: 경남 사천시 대방동 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4.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A=8,133\text{m}^2$
- 사업규모: 우수저류조 $18,000\text{m}^3$, 우수저류지 $3,000\text{m}^3$, 고지배수로 472m, 관로정비 237m 등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수립 공고일
- 나. 준공예정일: 2026. 12. 31.

6. 열람기간 및 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 가. 열람기간: 공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사천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7)
- 다. 의견서 제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7.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8. 관계도서는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31필지		45,374	8,133						
1	서동	64	전	843	635	박*진	경남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	하*득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3번길**, **(괘법동 그랑드원)	가압류 근저당권	
								새남해새마을 금고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아산리)	가압류	
								창원신용협동 조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도계동)	근저당권 지상권	
								수영세무서장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신한카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에이동(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 ***(호(내발산동))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이*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60번길 **~*	근저당권	
2	서동	65	전	1,289	1,184	박*주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고현동)	하*득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3번길**, **(괘법동 그랑드원)	가압류 권저당권	
								창원신용협동 조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도계동)	근저당권 지상권	
								수영세무서장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신한카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에이동(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 ***(호(내발산동))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서동	64-1	도	86	43	사천시	.				
4	서동	65-1	도	86	34	사천시	.				
5	서동	66	전	136	136	박*진	경남 남해군 삼동면 삼이로4번길 **	하*득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43번길**, **(폐법동 그랑드윈)	가압류 근저당권	
								새남해새마을 금고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아산리)	가압류	
								창원신용협동 조합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도계동)	근저당권 지상권	
								수영세무서장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신한카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 에이동(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다길 **, ***호(내발산동)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이*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60번길 **~*	근저당권	
6	서동	67	전	80	79	사천시	.				
7	서동	67-3	전	143	39	사천시	.				
8	서동	66-2	도	137	12	사천시	.				
9	서동	65-2	도	30	6	사천시	.				
10	대방동	750	구	3,831	11	국(국토교통부)	.				
11	대방동	161-3	도	33	1	곽*곤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				
12	대방동	161-12	대	33	1	사천시	.				
13	대방동	161-16	전	23	4	사천시	.				
14	서동	373	구	305	10	국(국토교통부)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서동	373-1	구	51	13	국(국토교통부)					
16	대방동	161-13	전	86	10	문*관	경남 용현면 선진리 **-*				
17	서동	178-5	도	888	69	국(국토교통부)					
18	서동	178-140	도	524	86	국(국토교통부)					
19	대방동	766	구	1,586	231	국(국토교통부)					
20	대방동	765-3	대	12,608	5,223	사천시					
21	대방동	765-23	대	210	4	사천시					
22	대방동	765-15	대	3,039	119	사천시					
23	대방동	765-25	도	470	22	사천시					
24	대방동	763	도	2,480	14	국(국토교통부)					
25	대방동	765-11	도	209	18	사천시					
26	동동	487	구	3,957	4	국(국토교통부)					
27	동동	15-1	대	54	8	사천시					
28	서동	31	도	5,818	11	사천시					
29	서동	176-27	도	4,085	101	사천시					
30	서동	178-141	도	875	3	국(국토교통부)					
31	서동	372	도	1,379	2	국(국토교통부)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사천시 공고 제2023-92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국유재산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철거)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소유)자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사 천 시 장

1. 처분내용: 행정대집행 계고(국유재산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철거)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3. 처분원인: 국유재산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4. 공고내용: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와 같음
5. 공고기간: 2023. 6. 22. ~ 2023. 7. 12.(20일간)
6. 공고방법: 사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 건설과(☎ 055-831-32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제 2023-2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 상 귀하

주소: 미 상

2023년 5월 25일, 사천시 공고 제2023-786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건축물을 2023년 6월 14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3년 7월 12일까지 반드시 철거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사천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26번지 (사천중학교 앞)	컨테이너 및 각종 주방기기	컨테이너 1EA (냉장고 3, 선반1, 싱크대 1, 제빙기 1, 커피머신 1)	직접철거 또는 철거용역

2023년 6월 22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840호

< 국유재산 무단 점유 가설건축물 현황 >

■ 위반내용

대지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비 고 (주방기기)
	층	면적(㎡)	구조	위반연도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626 (사천중학교 앞)	1	18 (3m x 6m)	컨테이너	2014년	냉장고3, 선반1, 썬크대1, 제빙기1, 커피머신1

■ 위치도



■ 현장사진

